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싸늘한 기온이 옷깃을 예미게 하고 주머니에 손을 집어 넣게 하는 계절이 다가왔다.

기온의 일교차가 커지면서 자칫 방심하다가는 월등히 앓는 질병으로 이해 고생하기가 쉽다.

요즈음처럼 특히 일교차가 심할 때에는 감기와 같은 원인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우리가 훈장을 이야기하는 감기는 기온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여 후두부위 이상의 호흡기 구조에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상기도 감염이라고 이야 기한다. 이것은 다시 부위에 따라



초가을 건강

일교차 심할때 감기조심

로도 선열, 입두염, 후두염 등으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임상증상으로는 콧물, 기침, 두통이 있다가 고열과 전신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며 음식 불을 삼키기가 곤란해지는 인두염 그리고 목이 쉬는 후두염 까지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증상들은 대개의 특별한 치료가 없이도 스스로 회복되는 경증이다.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감기 치료는 증상에 따른 대중요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세균에 의한 이차 감염이 생긴 경우에 한해서 항생제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상기도 감염 즉 감기의 예방 기기 전에 적절하게 감기를 치료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치료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으며 일반적인 치료법은 감염된 환자를 멀리 하는 것이 좋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므로 가족이나 집단 내에 환자가 있을 때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외출 후에는 손을 잘 씻으며 양치질을 열심히 하여야 한다. 감기는 감기 자체보다는 감기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흔한 합병증으로는 폐렴, 부비동 염, 중이염, 만성기관지염의 저절로 난다. 원인으로는 쿡사기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되며 계나 심혈관계로의 감염의 파동에 있어서 초기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로 중상에 따른 소아들의 피부병 또한 빠놓을 수 없는 질병이다.

가을철에 흔한 질환 중의 하나로 유행성 균육통이 있다. 이 질환은 이유없이 갑자기 온몸이 저리며 아프고 가슴·복부·어깨에 신한 통증이 있다. 두통이 동반되고 열이 재발성으로 반복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 병은 약 8일 정도 지나면 저절로 난다. 원인으로는 쿡사기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되며 초기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로 중상에 따른 대중요법이 있다.

과세 특례자로 불리할 때는 포기 가능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

♣ 生 活
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해
의 제2과세기간(7.1~12.31)
부터 과세특례자로 바뀐다.
또 반대로 과세특례자가 어느
한해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을 초과하게 된 경우는 역시
다음해 7월1일부터 일반과세
자로 유형이 변경된다.

**경
제** ○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금액을 넘느냐로 과세 유형이 판정된다.

○ 과세특례자가 경정 또는 재경정으로 공급대가가 기준 금액 이상이 된 경우는 경정 한 날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 휴업을 한 경우는 휴업 기간을 제외한 사업기간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여 판정하고, 휴업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경우는 신규사업자와 같은 방법으로 판정하게 된다.

○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사

○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사
의무가 면제되기는 하나 세금

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은 변경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
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
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과
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
여야 한다.

통지는 과세유형변경에 따라 사업자에게 준비기간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통지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하게 되면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준비를 못하게 되므로 통지받은 기간은 그대로 과세특례적용을 받고 그 다음 기간부터 일반과

세자가 된다.
그러나 일반과세자가 과세 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과세특례를 그대로 적용하여도 별 문제가 없다.

○ 화재복구시기 최근 적용
의무가 면제되기는 하나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지 못하게 되고 매입세액의 공제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다.

과세특례의 포기는 과세특례신고서를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로부터 3년간은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과세표준과 세액

-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은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이지만, 과세특례자의 경우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이다. 과세특례자들은 보통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고 상품가액에 포함시킨다.
- 세율과 납부세액

○ 세월과 힘주세력
대리·중개·위탁매매·도급의

경우는 3.5%, 그 이외의 경우는 2%가 세율이고,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세금계산서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간이세금계산

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품 등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는 있으며, 이를 신고시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의 5% 상당액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는 발행금액 즉 공급대가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한다.

신고·접수

과세특례자는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직전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한다. 고지기간은 1기분이 4월1일~4월10일, 2기분은 10월1일~10월10일이고 고지받은 후 예정신고기간 안에 납부해야 한다.

○ 확정신고·납부

과세특례자는 신고내용에 따라 2가지 서식으로 구분한 확정신고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연장신고는 60일) 내로

- 일내(확정신고 기간)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납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가산세액 및 그 계산근거
(4) 세금계산서 제출내용
(5) 기타 참고사항

○ 신고시 첨부·제출서류 확정신고서 제출시에는 (매입) 세금계산서,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生 活 경 제